

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

①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사업자단체활동지침」에 의거 아래에 명시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- 가. 가격을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- 나.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,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
- 다. 상품의 생산·출고·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
- 라.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
- 마.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- 바.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
- 사.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
- 아.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
- 자.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
- 차.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카.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
- 타.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
- 파.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

*공정위 고시 제2013-9호 「사업자단체활동지침」

- ② 국내 경쟁관련법 및 규정상 불공정 행위라고 의심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,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해서는 안 된다.
- ③ 조합[협회] 및 조합원사[회원사]는 이사회 뿐만 아니라 권역별회의 및 비공식 모임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